

〈번역논문〉

당 제국의 사치 금지령*

이 유 진 **

역대 중국의 법체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법은 황제로부터 나오
고 律 이외에도 법이 있는데, 황제가 반포한 詔·令·誥·諭·勅은 최고의
효력을 가진 법률형식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해 본문에서는 『唐大詔
令集』을 고찰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 의식주와 교통 등을 제한하는 反
奢侈 詔令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당대조령집』의 관련 조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즉
① 「關內諸州斷屠酷詔」,¹⁾ ② 「關內諸州斷屠殺詔」,²⁾ ③ 「官人百姓衣服不得

* 이 글은 向東, 「與九頭蛇的戰鬪—羅馬共和國和我國唐代反奢侈制度的比較」, 『福
建行政學院學報』 2015-3의 2장 「唐帝國的反奢侈詔令」을 번역한 것이다. 각주에
제시한 『唐大詔令集』의 사료들은 편의를 위해 역자가 적은 것이다.

**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1)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關內諸州斷屠酷詔」, “酒醪之用, 表節制於歡娛, 芻
豢之滋, 致甘旨於豐衍. 然而沉湎之輩, 絕業亡資, 惰窳之氓, 騁嗜奔欲. 方今烽燧
尙警, 兵革未寧, 年穀不登, 市肆騰踊. 越末者衆, 浮冗尙多, 肴羞麴糵, 重增其費,
去弊之術, 要在權宜. 令關內諸州官民, 且斷屠酷. 武德二年二月”(商務印書館,
1959, 561쪽).

2)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關內諸州斷屠殺詔」, “有隋失馭, 喪亂弘多, 民物凋
殘, 俗化踰侈, 耽嗜之娛, 競逐之甘, 屠宰之家, 恣行刳殺, 芻豢之畜, 靡供肴核之
資, 貽卵之羣, 莫遂蕃滋之性, 傷財墮業, 職此之由, 攘攷穿窬, 因茲未息, 但禮曰,
君無故不殺牛, 大夫無故不殺羊, 士無故不殺犬豕, 庶民無故不食珍, 非唯務在仁
愛, 蓋亦之儉約, 方域未寧, 尤須節制, 凋弊之後, 宜先長育, 豈得恣彼貪暴, 殘殄庶
類之生, 苟徇目前, 不爲經久之慮, 導民之理, 有未足乎, 其關內諸州, 宜斷屠殺, 庶

逾令式詔,³⁾ ④「禁斷大酺廣費勅」,⁴⁾ ⑤「禁珠玉錦綉勅」,⁵⁾ ⑥「禁奢侈服用勅」,⁶⁾ ⑦「禁斷錦綉珠玉勅」,⁷⁾ ⑧「禁殺害馬牛驢肉勅」,⁸⁾ ⑨「禁斷寒食鷄子

六畜滋多, 而兆民殷贍, 詳思厥衷 更爲條式. 武德三年四月”(561~562쪽).

- 3)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官人百姓衣服不得逾令式詔」, “勅, 采章服飾, 本明貴賤, 升降有殊, 用崇勸獎, 如聞在外官人百姓, 有不依式令, 遂於袍衫之內, 著朱·紫·青·綠等色短衫·襖子, 或於閭野, 公然露服, 貴賤莫辨, 有蠹彝倫. 自今已後, 衣服上下, 各依品秩, 上得通下, 下不得僭上. 仍令所司嚴切禁斷, 勿使更然. 咸亨五年四月”(562쪽).
- 4)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禁斷大酺廣費勅」, “勅, 禮存寧儉, 書戒無益, 約費畜財, 爲國之本, 至如賜醮合宴, 正欲與人同歡, 廣爲聚斂, 故非取樂之意, 況自徇於奢, 是不誠也, 心勞於僞, 是不經也, 殷鑒于此, 良用慚然, 自今已後, 兩京及天下酺宴, 所作山車·旱船·結綵樓閣·寶車等無用之物, 並宜禁斷, 先天二年八月二十五日”(562쪽).
- 5)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禁珠玉錦綉勅」, “勅, 朕聞珠玉者, 饑不可食, 寒不可衣, 故漢文云, 彫文刻鏤傷農事, 錦綉纂組害女工, 農事傷則饑之本, 女功害則寒之源, 又賈生有言曰, 夫人一日不再食則饑, 終歲不製衣則寒, 飢寒切體, 慈母不能保其子, 君焉得以有其人哉, 朕以眇身託于王公之上, 曷嘗不日旰食, 未明求衣, 思使反朴還淳, 家給人足, 而倉廩未實, 饑饉相仍, 水旱或愆, 糟糠不厭, 靜思厥故, 皆朕之咎, 致有漿酒藿肉, 玉食錦衣, 或相夸尙, 浸成風俗, 夫令之所施, 惟行不惟反, 人之化上, 從好不從言, 是以古先哲王, 以身率下, 如風之靡, 何俗不易, 此事近有處分, 當已施行, 朕若躬服珠玉, 自玩錦綉, 而欲公卿節儉, 黎庶敦朴, 是使揚湯止沸, 涉海無濡, 不可得也, 是知文質之風, 自上而始, 朕欲損金抵玉, 正本澄源, 所有服御金銀器物, 今付有司, 令鑄爲鋌, 仍別貯掌, 以供軍國, 珠玉之貨, 無益於時, 並即焚於殿前, 用絕爭競, 至誠所感, 期於凡百, 有遠朕命, 其宮掖之內, 后妃以下, 咸服澣濯之衣, 永除珠翠之飾, 當使金土同價, 風俗大行, 日用不知, 克臻至道, 布告朕意焉. 開元二年七月”(562~563쪽).
- 6) 『당대조령집』 권108 禁約上, 「禁奢侈服用勅」, “勅, 彫文刻鏤, 衣紈履絲, 習俗相夸, 殊塗競爽, 致傷風俗, 爲弊良深, 珠玉錦綉, 旣令禁斷, 準式三品已上飾以玉, 四品已上飾以金, 五品已上飾以銀, 宜於腰帶及馬銜鑿酒杯杓依式, 自外悉鑄爲鋌, 婦人衣服, 各隨夫子, 其已有錦綉衣服, 聽染爲皂, 成段者官爲市取, 天下更不得採取珠玉, 刻鏤器玩, 造作錦綉珠繩, 織成帖綵二色, 綺綾羅作龍鳳禽獸等異文字, 及豎欄錦文者, 遠者決一百, 受雇工匠, 降一等科之, 兩京及諸州, 舊有官織錦坊, 悉停. 開元二年七月”(563쪽).
- 7)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禁斷錦綉珠玉勅」, “勅, 朕聞召公曰, ‘弗作無益害有

相餉遺勅,⁹⁾ ⑩「禁大花綾錦等勅」,¹⁰⁾ ⑪「禁車服第宅踰侈勅」,¹¹⁾ ⑫「申禁公

益'. 孔子曰, '奢則不遜儉則固', 斯乃聖賢之至言矣! 叔代遷訛, 僻王驕縱, 頗營於玉盃·象筋, 不務於捐金抵璧. 好之者君也, 習之者人也, 卽用匹帛服長纓之類歟? 朕爰在幼冲, 每期質朴, 手未曾持珠玉, 目未嘗觀錦綉, 願言其志, 造次不忘. 寅奉休圖, 勉康政道, 常想漢文衣綿之德, 晉武焚裘之事, 竟未能令行禁止, 敦本港棄末, 朕甚懼之, 今王侯勳戚, 下洎廝養, 所得者重於遠, 所求者貴於異. 至於彫文刻鏤, 衣紈履絲, 習俗相夸, 殊塗競爽, 有妨於政, 無補於事. 豈朕之言不明, 教之未篤也. 且一夫一女, 不耕不織, 則天下有受其饑寒者. 今四方晏如, 而百姓不足, 豈不以尚於珠玉, 珍於錦綉, 墾田疇而奪其務, 出布帛而害其功歟? 珠玉錦綉等, 自今已後, 切令禁斷. 如更循舊弊, 並歸罪長官. 仍令御史金吾嚴加捉搦. 州牧縣宰勸督農桑, 待至秋收, 課其貯積, 使人知禮節, 俗登仁壽. 有司仍爲條例, 稱朕意焉. 開元二年七月三日”(564~565쪽).

- 8)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禁殺害馬牛驢肉勅」, “勅, 自古見其生不食其肉, 資其力必報其功. 馬牛驢皆能任重致遠, 濟人使用, 先有處分, 不令宰殺. 如聞此來尚未全斷, 羣牧之內, 此弊尤多. 自今已後, 非祠祭所須, 更不得進獻馬牛驢肉, 其王公以下及今天下諸州, 并諸軍宴設, 及監牧, 皆不得輒有殺害. 仍令州縣及監牧, 諸軍長官, 切加禁斷, 兼委御史隨事糾彈. 開元十一年十一月”(565쪽); 『全唐文』 권27 元宗8, 「禁屠殺牛馬驢詔」, 7368쪽.
- 9)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禁斷寒食鷄子相餉遺勅」, “勅, 天地之德, 莫大於生成, 陽和之時, 先禁於卵殯, 比來流俗間, 每至寒食日, 皆以鷄卵鴨子, 更相餉遺, 旣行時令, 固不合然, 自今已後, 永宜禁止, 朕每思儉朴, 深惡浮華, 諸色雕鏤等, 已今變革, 其公私宴會, 比者多假菓及樓閣, 虛爲損耗, 競務矜誇, 亦宜禁絕, 有違者, 準今月八日勅”(565쪽).
- 10)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禁大花綾錦等勅」, “勅, 王制命市納賈, 以觀人之好惡. 布帛精麤不中數, 廣狹不中量, 不鬻於市. 漢詔亦云, ‘纂組文綉, 害女工也’. 朕思以恭儉克己, 淳朴化人, 每尙素玄之服, 庶齊金土之價. 而風俗不一, 踰侈相高, 津弊於時, 其來自久. 耗縑繪之本, 資錦綉之奢, 異彩奇文, 恣其誇競. 今師旅未戢, 黎元不康, 豈使淫巧之功, 更虧恒制! 在外所織造大張錦·軟端錦·透背及大襴錦·竭鑿六破已上錦·獨窠吳綾·獨窠司馬綾等, 並宜禁斷, 其長行高麗白錦·雜色錦·及常行小文字綾錦等, 任依舊例造, 其綾錦花文, 所織盤龍·對鳳·麒麟·獅子·天馬·辟邪·孔雀·仙鶴·芝草·萬字·雙勝·及諸織造差樣文字等, 亦宜禁斷. 兩都委御史臺, 諸州俯委本道節度·觀察使, 切加覺察, 如違犯, 具狀聞奏. 大曆六年四月”(566쪽).
- 11)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禁車服第宅踰侈勅」, “蓋聞儉以足用, 令出唯行, 著在前志, 實爲理本. 朕自臨四海, 憫元元之大困, 日昃忘食, 宵興疚懷, 躬絕文綉之

私車服踰侈勅¹²⁾ 등이다. 이러한 조령의 반포 시기는 高祖 武德 연간부터 宣宗 大中 연간까지 줄곧 지속되어(619~867) 거의 당대를 포괄하고 있으며 대체로 20여 개가 된다. 이러한 황제 조령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사치행위를 제한하는 조령은 연회[宴飲]·복식·명절·보석·수레·주택·婚喪 등에 대한 제한규정이다. 예를 들어 ⑫ 「申禁公私車服踰侈勅」에 “그 장례·혼례·길흉의 예물은 정해진 규정[著定]이 있는데, 더욱이 듣건대 僭差하다고 한다”고 하였다.

둘째, 그 적용범위는 관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을 포함한다. 관인에게 사치행위를 제한하는 법은 품계에 따라 달랐고 주거·교통·복식·기물의 定式을 규정하여 僭越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典禮·巡行·差出·연회 등 각종 직무 소비의 표준을 명확히 하였다. 개인 생활에 대해서도 음식·연회·명절·복식·그릇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음식·연회와 같은 것을 보면 ⑧ 「禁殺害馬牛驢肉勅」에 “그 王公 이하 및 지금 천하 諸州와 諸軍의 연회 및 監牧은 모두 함부로 殺害할 수 없다. 또 州縣, 監牧, 諸軍의 장관에게 엄격히 禁斷하게 하고 아울러 御史에게 일에 따라 糾彈하도록 한다”라고 하였다.

飾, 尙愧茅之儉, 亦喻卿士, 形于詔條. 如聞積習流弊, 餘風未革. 車服第宅, 相高以華靡之利, 資用寶貨, 固啓于貪冒之源. 有司不禁, 侈俗滋扇, 是朕之教導未敷, 使兆庶昧於趨尙也. 其何以足用行令, 以臻于邳理歟? 永念愆歎! 迨茲申勅, 自今, 內外列職位之士, 其各務素朴, 弘茲國風, 有僭差尤甚, 御史列上. 主者宣示, 知朕意焉”(566~567쪽).

- 12) 『당대조령집』 권109, 禁約下, 「申禁公私車服踰侈勅」, “理道所關, 制度最切近者. 風俗踰侈, 歲月滋甚, 人隳本業, 用多費財. 爰命有司, 撮舉彛制, 務從簡朴, 度可久行. 將使尊卑有倫, 刑罰少息. 其喪葬婚嫁, 吉凶禮物, 皆有著定, 尤聞僭差. 雖不在條件之物, 亦委所司準令或勾當, 仍切加捉搦, 不得輒有容縱. 軍國異容, 古今通理, 禁軍仗衛雜飾, 及諸道節度等使, 應緣軍裝服, 卽不在此限. 或有留令慢法, 委御史臺彈奏. 當坐長吏, 用清頽風”(567쪽).

셋째, 이러한 칙령을 반포한 주목적은 생산에 유리하고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등급을 구분하고 절약을 강조하는 것 등이다. 예를 들어 ⑩「申禁公私車服踰侈勅」에 “이에 有司에게 명하여 彝制를 撮舉하여 簡朴에 따르도록 힘쓰게 하고 법도가 가히 오랫동안 행해지게 하며 장차 尊卑의 순서가 있게 하여 刑法이 다소 행해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務從簡朴”은 절감을 표명하는 것이고, “度可久行”은 사회 안정 유지를 가리키며, “尊卑有倫”은 신분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단을 바로잡고 사치 퇴출하는 것이 오래도록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관련 제도를 유지·강화해야 하는데,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관리에게 관련 직권을 부여하는 것도 그 수단 중의 하나이다. ⑪「禁車服第宅踰侈勅」을 예로 보면, 당 文宗이 “검소함으로써 쓸 것을足하게 하고 숨이 내리면 오직 행해야 한다”고 함과 동시에 “流弊가 쌓여 餘風이 아직 고쳐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주요 원인이 “有司가 금하지 않아” 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부터는 내외 직위의 관리가 각각 소박함에 힘써 이러한 國風을 펼치도록 하고 僭差가 특히 심한 경우에는 御史가 규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그 뜻은 각급관리들이 수레·복식·저택을 다투어 호화롭게 하는 사치 풍조를 즉각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규정을 계속 어기는 자에 대해서는 어사가 탄핵하여 상주하게 하였다.

이러한 조령의 반포는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611년에 일어난 隋 말의 농민봉기는 李淵 부자를 영수로 하는 關隴貴族 관료집단이 全國의 정권을 잡도록 하고, 초기의 통치세력으로 하여금 백만 군대를 보유한 방대한 국가기구가 酷刑·濫法과 사치로 인해 순식간에 망한 것을 목도하게 하여 당 초의 입법 사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둘째는 당 초기에 “烽燧가 여전히 경계를 알리고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곡식이 익지 않고 市肆[의 물가]가 등귀하고 있다”(①)라고 하여, 전쟁의 지속과 물자의 품귀가 통치자로 하여금 부득불 수을 내려 근검을 숭상하게 하였다. 盛唐¹³⁾ 시기에 이르면 제국은 안정되고 경제 또한 큰 발전을 이루어 통치자가 초기의 “천하를 빼앗는다(打天下)”는 사고에서 “천하에 군림한다(坐天下)”는 사고로 바뀌었다. 봉건적 등급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高宗은 ③ 「官人百姓衣服不得逾令式詔」를 반포하고, 玄宗은 ⑥ 「禁奢侈服用勅」, ⑤ 「禁珠玉錦綉勅」, ⑦ 「禁斷錦綉珠玉勅」, 「禁僭用服色詔」 등을 반포하여 관인과 백성들의 복식 단장을 규제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晚唐 시기에 제국이 쇠퇴하여 文宗으로 대표되는 중흥의 뜻을 가진 황제가 반포한 조칙, 예컨대 「禁大花綾錦等勅」 등은 대부분 “恭儉하게 克己하고 淳朴하게 民을 교화시키는”(⑩)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셋째, 당대의 많은 반사치조령은 전통적인 도교·유교의 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절제와 극기 관념이 구체화된 것이다. 노자는 “5가지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또 말을 타고 짐승을 사냥하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나쁘게 만든다”¹⁴⁾ 고 하였다. 그리고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어 이를 지니고 지킨다. 하나는 자비이고, 둘은 검소이고, 셋은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는 것이다. 자비로 용감할 수 있고, 검소로 넉넉할 수 있으며, 감히 천하에 앞장서지

13) [역자주] 唐詩의 발전 시기를 흔히 初唐·盛唐·中唐·晚唐의 네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역사학 쪽에서도 종종 이러한 시기구분을 한다. 초당은 당 건국부터 睿宗 太極 원년까지(618~712), 성당은 현종 개원 원년부터 천보 말년까지(713~755), 중당은 肅宗 至德 원년부터 문종 大和 9년까지(756~835), 만당은 문종 개성 원년부터 당의 멸망까지(836~907)를 가리킨다. 김학주 역자, 『新譯 唐詩選』, 명문당, 2003, 26쪽 참조.

14) 『老子校釋』 第12章,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馳騁畋獵令人心發狂, 難得之貨令人行妨”(中華書局, 45~46쪽).

않음으로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¹⁵⁾고 하였다. 맹자는 “마음을 기르는데 욕심을 적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 그 사람됨이 욕심이 적으면 비록 보존되지 못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적을 것이요, 사람됨이 욕심이 많으면 비록 보존됨이 있더라도 적을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자들의 가르침은 모든 역대 帝王들로 하여금 절약·검소를 唱導하고 사치를 금지하는 조령을 반포할 필요성을 가지게 하였다.

15) 『老子校釋』第67章, “我有三寶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 夫慈, 故能勇, 儉, 故能廣, 不敢爲天下先, 故能成器長”(271쪽).

16) 『孟子』盡心章下, “養心莫善於寡欲, 其爲人也寡欲, 雖有不存焉者, 寡矣. 其爲人也多欲, 雖有存焉者, 寡矣”.

